





##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이재승\* · 이완희\*\* · 문준섭\*\*\*

### 〈요 약〉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안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해양보안, 미국해안경비대, 한국해양경찰, 통합적 딥워터 시스템, 미국해양경찰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제1저자)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교신저자)

\*\*\* Kean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 Public Administration(제2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br>II.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역사와 조직<br>III.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임무<br>IV. 미국해양경비대(USCG)의 임무 변화 및 지속성<br>V.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양경찰<br>VI. 결 론 |
|---|

## I.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하여 기존의 12 해리에서 200해리로 해양관할권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종열, 2006). 또한 수출입의 99.7%가 해상교통로를 이용하고 있어 소말리아 해적 피랍사건 등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로 인한 원유유출 사고로 인해 대형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환경파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는 자원개발의 무한한 공간과 미래 생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해양 개척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김영철, 2011). 이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유산으로서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국가 성장의 중요한 터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달로 인하여 해양에 대한 이용가치가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보다 많이 선점하기 위해 세계 연안국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

해지고 있다 (박주상, 정병수, 하상균, 2011).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역사와 역할을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1790년 미 의회가 미 해군을 창설하기 전까지 해양경비대(USCG)는 바다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 조직이었다. 미 해군이 창설되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은 해양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인 해안경비대(USCG)를 창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보면 미국이 해양관련 업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며 또한 해안경비대(USCG)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해안경비대(USCG)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 하나이며 1790년에 미 해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국 영해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군사조직이었다. 현재까지도 해안경비대(USCG)는 육, 해, 공군과 함께 군으로 분류되며 평시에는 미국 국토안전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으로 제 일선에서 해양법의 시행, 해양 환경 보호, 그리고 생명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또는 대통령의 지시 상황에는 미 해군의 산하로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군 조직의 하나로써 현역 및 예비전력 인원들 모두가 군사법무부의 통제를 받으며 급여 및 수당의 수준 그리고 혜택도 다른 4 개의 군 (육, 해, 공군 및 해병대)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관련 사고와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 II.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역사와 조직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공식적인 창설과 임무부여는 1790년 8월 4일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재무장관의 제안으로 Tariff Act를 발효하면서 연방 관세 및 무역법을 적용하고 밀수방지와 관세법 집행을 주목적으로 10척의 함정을 가지고 현재 해양경비대(USCG)의 전신인 “The Revenue Cutter

Service”를 창설하여 운영하였다. 최초의 미국해양경비대(USCG)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Newburyport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이 조직의 크기와 임무도 확장되었다. 1915년 미 의회가 The Revenue Cutter Service 와 The U.S. Life-Saving Service를 통합하면서 현재의 해안경비대(USCG)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39년에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등대 업무도 해안경비대(USCG)가 담당하게 되었다. 1946년에는 미 상무부 산하에 있던 해양 검사 및 탐색부가 해안경비대(USCG) 산하로 예속되어 해상 무역 허가 및 안전 관련 업무까지 해안경비대(USCG)가 맡게 되면서 해안경비대(USCG)는 해양에서의 생명 보호와 인명구조 그리고 미국 해양법 시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방 정부기관이 되었다. 현재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본부는 워싱턴D.C.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략기획위원회, 해양위원회, 민원국, 민간인권관리위원회가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지방조직으로 대서양지역 사령부와 태평양지역 사령부의 2개 사령부 조직을 두고, 대서양지역 사령부 산하에 5개 해양경비단과 수리 및 물류기지가 있으며, 태평양지역 사령부 하에 4개 해안경비단과 수리 및 물류기지를 각각 두고 있다(박주상, 정병수, 하상근, 2011).

현재 해안경비대(USCG)의 모습을 갖추게 된 성장 동력의 핵심은 해안경비대(USCG)의 끊임없는 현대화와 재정비를통해 올바른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예산은 매년 16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해안경비대(USCG) 현재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임무의 범위에 더 나은 균형을 제공하며 장비를 현대화하여, 국토 보안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U.S. Coast Guard 웹사이트 참조). 미국해양경비대(USCG)는 현재 약 250여대의 경비함과 1400여대의 고속단정, 총 180대의 헬기, 204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해양 안전과 보안 팀, 추가적인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들은 중요한 기반시설, 해안과 항만 보안, 그리고 방어 준비를 하도록 하는 능력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U.S. Coast Guard 웹사이트 참조).

### Ⅲ.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임무

미국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 USCG)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해양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집행기관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주요임무는 국민과 환경을 보호를 목적으로 공해상, 영해, 연안지역, 항구 등 자국의 경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로써, 대략적으로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임무는 2002년 발효된 The Homeland Security Act에서 해안경비대(USCG)의 임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국가 안보 관련 임무 (Homeland Security Missions)와 비 국가 안보 관련 임무 (Non-Homeland Security Missions)이다.

## 1. 국가 안보 관련 임무 (Homeland Security Missions)

국가 안보 관련 임무의 첫 번째로 항구, 수로 및 해안 경비 (Ports, Waterways, and Coastal Security: PWCS)의 임무이다. PWCS는 자국 영해와 해안 수송 체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테러 및 해상 보안 체계 설립 활동 그리고 재난 구호 활동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마약밀수 금지활동의 임무이다.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해양 경로를 통해 밀수되는 불법 마약류를 차단해 미국 내 마약 공급을 줄이고자 미국 세관 (U. S. Customs Service) 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의 밀수입 단속에 힘쓰고 있다. 세 번째는 수색 및 인명구조 (Search and Rescue: SAR)의 임무이다. 수색 및 인명구조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가장 오래된 임무 중 하나로 해양에서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며 자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연계되는 항상 우선시 되는 임무이다. 해안경비대(USCG)의 임무 활동 반경은 해양에만 국한 되지 않고 내륙의 강, 운하, 그리고 일반수로까지 적용된다. 네 번째 임무는 방어 준비 (Defense Readiness)태세 유지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해안경비대(USCG)는 전시 또는 대통령의 명령 시 미 해군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통관 보안 및 항구 방어, 그리고 해안 경계 및 전투와 연관된 작전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 해군을 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임무는 불법 이민자 금지 활동이다.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해상 경로를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다른 연방 정부 기관과 협조하여 해상 감시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은 밀수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해상 안전이다. 이것을 위해 현재 해상안전 강화 계획(the Marine Safety Enhancement Plan:

MSEP)을 진행 중이다. 해상안전 강화 계획은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양 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해상 안전 시스템, 관련 지식, 그리고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다년 종합 프로그램이다.

## 2. 비 국가 안보 관련 임무 (Non-Homeland Security Missions)

나머지 5가지 임무는 비 국가 안보 관련 임무 (Non-Homeland Security Missions)이다. 그 첫 번째로 항해 보조 (Aids to Navigation)이다. 해양 항해 관련 규칙 및 법의 적용을 위해 활동하며 등대 서비스 등을 통해 자국 영토 및 공해상에서의 자국 및 외국 선박의 항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생활 해양 자원 (Living Marine Resource)의 보호이다. 이것은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공해의 중요 영역을 보호하는 해안경비대(USCG)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해안경비대(USCG)는 해양에서 the Magnuson-Stevens Fisheri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MSFCMA) 준하는 수산법을 적용하여 생활 해양 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세 번째는 해양 환경 보존의 임무이다. 이것을 위해 해안경비대(USCG)는 해양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규칙 및 법을 적용하여 해양에 쓰레기 무단 방출, 해양환경에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외래종의 도입, 그리고 석유 및 화학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로 Ice Operations의 임무이다. 해안경비대(USCG)는 선박 및 지역사회에 비상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중요한 해상 상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Great Lakes와 동북지역에 얼음 분쇄 서비스(Icebreak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안경비대(USCG)는 다른 법 집행의 임무도 가지고 있다. 외국 어선이 미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해 불법 어업 활동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해상 경계선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국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해안경비대(USCG)의 중요한 기본 임무이다. 따라서 해안경비대(USCG)는 해상에서의 불법적이고 규칙에 어긋난 보고되지 않은 (IUU) 어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협약을 적용한다.

## 3.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활약상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1790년 창설이래부터 지속적으로 군 작전에 참여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78-1801년 사이에 프랑스와 벌어진 Quasi-War에서 미국 상선을 나포하는 프랑스의 사략선 (당시 미국의 상선을 나포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개인 전투함)을 막기 위해 남쪽 해안과 서인도 제도 인근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해안경비대(USCG)는 18척의 프랑스 사략선을 나포하였으며 후반부에는 미 해군을 지원하여 더 많은 프랑스 사략선을 나포하는데 기여하였다(USCG 웹사이트 참조).

대영제국과의 전쟁기간에도 해안경비대(USCG)는 많은 전과를 올렸다. 1813년 6월에 해양경비대(USCG)의 함선(Cutter) ‘Surveyor’호는 두 배가 넘는 적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영국군에게 나포되었다. 당시 영국해군 사령관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맹히 싸운 ‘Surveyor’호의 용맹함을 높이 사 ‘Surveyor’호 선장의 검을 미국에 반환하였다. 또한 1813년 10월에는 해안경비대(USCG)의 함선(Cutter) ‘Vigilant’호가 당시 25척의 미국 상선을 나포하였던 영국의 ‘Dart’라는 사략선을 나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1846-48에 발발했던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해안경비대(USCG)는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당시에는 미 해군이 해안 상륙함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안경비대(USCG)의 지원으로 해안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으며, 또한 해안경비대(USCG)의 함선(Cutters)은 멕시코 남쪽 항구들을 봉쇄해주고 해군 함정들을 호위해주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98년에 쿠바의 독립을 둘러싸고 발발한 미국과 스페인간의 전쟁에서도 해안경비대(USCG)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함선(Cutter) ‘McCulloch’는 마닐라 만 (Manila Bay) 전투에서 처음으로 스페인 군과 격전을 벌인 전함이다. 총 8척의 함선(Cutters)이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쿠바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카데나스 만 (Cardenas Bay) 전투에서도 해안경비대(USCG)의 함선(Cutters)들은 전투에 참여하고 구조 작전에도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함선 ‘Hudson’은 미 해군 구조작전에서의 전과를 인정받아 미 의회에서 훈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세계 1차 대전 당시에도 6척의 함선(Cutters)을 유럽으로 보내어 병력 및 장비 수송 및 상륙 작전을 지원하였고 해안경비대(USCG)의 장교 및 병력들은 해군 직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장교들은 미 해군 항공기지의 지휘를 하는 등 많은 해군 작전에서 지휘 및 통제관의 역할을 하였다.

1919년에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Coast Guard는 법 실행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 수행을 위해 Coast Guard는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수용 발전 시켰으며 특히 이 시기에 해군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함선(Cutter) 전술을 발전시켰다. 그 당시에 주류의 밀수를 주로 하던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미 해군에서 31척의 구축함을 해안경비대(USCG)에 배속시켰으며 그 구축함들은 해안경비대(USCG)의 지휘아래 주류 밀수 조직을 섬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것은 미국 역사에서 해안경비대(USCG)가 처음으로 미 해군 구축함을 직접 운용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밀수 조직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보 및 첩보를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 부서를 창설하여 전략 정보 능력을 발전시켰다.

세계 제 2차 대전 당시에도 해안경비대(USCG)는 1941-42년에 전투 임무에 파견되어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진주만에서 'Tancy'호는 대공 및 대잠 방어 임무를 해군과 함께 수행하였다. 1941년에는 그린랜드에 파견되어 병력 수송, 수색 및 구조, 그리고 독일군 침투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육군 수송선 Dorchester가 독일군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하였을 때 'Comanche'호 와 'Escanaba'호 가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여 300여명의 인원을 구출했다.

1942년 싱가포르에서는 해안경비대(USCG) 수송선 'USS Wakefield'호는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연합군 병력을 수송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해안경비대(USCG) 예비군에게는 해상 순찰 임무가 부여되었고 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플로리다와 롱 아일랜드에 위치한 주요 공장 및 철도를 파괴하기 위해 침투한 독일군을 발견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대서양 연안에서의 해양 순찰업무를 맡았던 해안경비대(USCG)는 전쟁 기간 동안 총 12 척의 독일 U-Boat를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태평양에서도 해안경비대(USCG)는 해군 및 육군 병력 및 물자 수송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태평양에서 이뤄진 주요 상륙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한국 전쟁 당시에 해안경비대(USCG)는 당시 창설된 지 얼마 안된 한국 해군의 훈련을 담당하여 한국 해군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전쟁기간 동안 LORAN (Long Range Navigation) 본부를 설치하여 해상 수송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탄약 및 무기 선적의 검색을 담당하였고, 그리하여 이 시기에 해안경비대(USCG)내에 항만 경비대가 창설되었다.

베트남전에서 해안경비대(USCG)는 복합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함정들을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 내륙 수로 정찰활동을 하였으며, 항만 경비, 전투 참여, 수송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해안경비대(USCG) 조종사들은 미 공군과 함께 전투 및 수색 및 구조 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이 시기에 자국 내로 들어오는 항만 검문검색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폭발물 제거 반을 창설하여 주요 항만에 배치하게 되었다.

1990년 8월에는 총 950명의 예비전력을 소집하여 걸프전에도 참여하였다. 당시 해안경비대(USCG)에서 여성 인력도 파견되었는데 이것은 해안경비대(USCG) 역사상 여성 인력이 처음으로 전투 임무에 파견된 것이다. 또한 해안경비대(USCG) 인력들은 11개의 이라크 오일 플랫폼을 점령하고 23명의 이라크 병력을 생포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팀당 550여명의 예비전력으로 구성된 해안경비대(USCG) 산하 공항 경비대 3 팀이 최초로 해외 파병에 참여하여 이라크로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안경비대(USCG) 항공 전력도 기름 방출을 감시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9/11 테러 발생 당시 뉴욕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해안경비대(USCG)가 최초로 상황에 대응한 군 조직이었다. ‘Tahoma’호는 상황 발생 후 해상 교통을 통제하고 이동 지휘통제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양경비대(USCG)의 다른 해상 전력들은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게 허드슨 강을 건너 뉴욕 시 밖으로 대피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해안경비대(USCG)는 테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빨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9/11 테러 후 발발한 이라크 전에서도 해안경비대(USCG)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력들의 진입을 위한 해상 포격을 지원하고 해상 경비대를 파견하여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에 있는 항만들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특히 해안경비대(USCG)의 110-foot 함선은 해상 전투에서 침병 역할을 하고 병력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등 전투에서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항만 경비대와 지원 인력, 함선, 수륙양용 등을 포함한 총 1250여명의 해안경비대(USCG)병력과 자원이 이라크전에 투입되어 각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IV. 미국해양경비대(USCG)의 임무 변화 및 지속성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도 국가 방어의 임무는 오늘날까지도 최우선으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 해양경비대(USCG)의 합대사령관이었던 Thomas H. Collins (2004)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에 해안경비대(는 변화의 국면의 맞이하게 되었다. 2002년에 미 국토안보법(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이 발효됨에 따라 해안경비대(USCG)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재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재 인식되어졌다. 그 결과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로 편제 된 후부터 국가 방어의 임무가 강조됨에 따라 복합적 임무수행의 유연성(Multimission Flexibility)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자금의 확대와 인원 보충이 이루어 졌다. 해안경비대(USCG)의 민사 및 군사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특성상 그에 상응하는 임무 수행의 유연성(Multimission Flexibility)은 필수요소로 인식되었다. 그의 일환으로 이라크 전 당시 해안경비대(USCG)는 작전에 참여를 위해 출발하는 많은 부대들과 물자들의 해상안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해안경비대(USCG)는 예비전력의 68%까지 동원하여 작전에 참여하는 많은 조직들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라크 전 당시 전투에도 참여하여 많은 군함 및 병력들이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콜린스 (Collins, 2004)는 복합적 임무 수행의 유연성을 위해 미 정부 내 다른 기관과 그리고 다른 나라 및 국제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임무 수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정부 내 다른 기관 및 국외, 국제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임무수행으로 연간 불법마약류 적발 수가 2003년까지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성공적인 임무수행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콜린스 (2004)는 긴밀한 협조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테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One Team, One Fight”이라는 명제 아래 다른 정부 기관 및 시설 업체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해양 안전 및 환경 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3년에 해안경비대(USCG)는 이런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해양 안전 보안 전략을 세워 임무를 수행해 왔다. 대테러 및 국가 방어 임무는 현재까지도 해양경비대(USCG)의 제일 최우선시 되는 임무이며 테러 예방 및 발생 시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 및 작전을 시행해 오고 있다.

콜린스 (2004)에 따르면 해안경비대(USCG)는 군사 및 국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기존에 맡아왔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불법 어업 단속, 수색 및 인명구조, 항해 지원, 얼음 분쇄 등 미국 내 해양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복합적임무(Multimissions)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해 왔던 것처럼 해안경비대(USCG)는 미국 내에서도 복합적임무(Multimissions)를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 기관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에도 해안경비대(USCG)는 복합적임무 수행의 유연성 (Multimission Flexibility)의 확보를 위해 재정 확보 및 인원 보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1. 복합적 임무 유연성(Multimission Flexibility)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1790년대부터 국가의 해양안보를 위한 리더로서 역할을 해 왔다. 2003년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활동범위와 다양성은 해양안전, 보안, 기동성, 그리고 환경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기관과 민간 부분과의 오래된 동반관계 역사에 기초한다. 미국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의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이동은 역사적인 균형의 변화였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재편성은 미국 초대 국토안보부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인 Ridge의 리더십과 노력 그리고 22개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성취되었다. Ridge는 "One Team, One Fight" 라고 말하며 국가를 위협하는 국제 테러와 다른 위협으로부터 모두가 협력하여 싸워야 함을 강조했다. Ridge는 2003년 11월 U. S. Coast Guard Academy 사관후보생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협력하는 Coast Guard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를 개발해야 했을 것이다"(Collins, 2004, p. 15) 라고 하여 미국 해안경비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임무수행에 있어 가장 강력한 장점은 복합임무(Multimission)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Collins, 2003). 무장한 군대 역할(USCG의 특별법 Title 14 U. S. Code Section 1), 법 집행 권한 등의 다양한 임무를 맡아왔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통해 연방(Federal), 주

(State), 지방(Local), 그리고 민간 분야(Private Sector)와의 다리 역할을 하여 협력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군대로서 그리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미국 해안 경비대(USCG)는 연방정부의 국토보안과 국토방어 분야를 구별 짓는 경계선에 걸쳐 있다(Collins, 2003). 콜린스(Collins, 2003)는 그리하여 국토보안에서 완전히 발달한 위기 상황 시 국토 방어 체계로의 전환이 비교적 단시간에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미 해안경비대(USCG)의 복합적 임무수행의 유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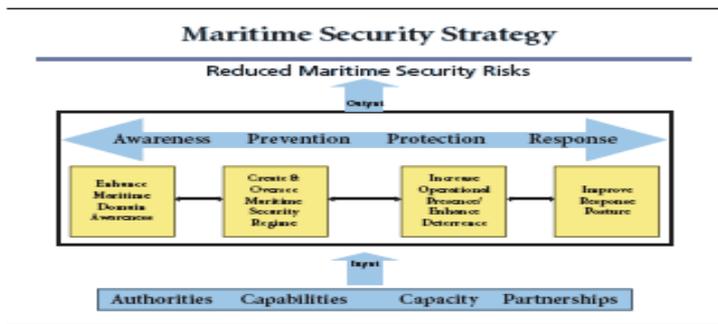
## 2. 해양 전략(Maritime Strategy)

2003년 국토안보부(DHS)는 모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임무의 수행의 유연성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국토안보를 위한 새로운 해양 전략(Maritime Strategy)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양 전략(Maritime Strategy)의 단계별 방어 법은 해안경비대(USCG)가 상업의 흐름을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운용되어 온 미국 항만과 수로 보안을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노력의 집합적인 결과는 해양 보안 위협 감소에 그 목적을 두었다.

전략은 해양경비대(USCG)의 법적 권한, 활동 능력 그리고 내부와 외부 파트너십에 기초하며 이러한 전략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참고>. 이것은 해양 지역 인식 강화(Enhancing maritime domain awareness);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해양 보호 전략 형성과 관리(Building and administering an effective maritime security regim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항만, 해안가 등에서의 군사적 그리고 민간 활동 증가(Increasing military and civil operational presence); 그리고 보안 사건에서 대응 자세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전략은 위협을 감소시키는 예방에 중점을 두며 해양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를 위한 새로운 해양 전략(Maritime Strategy) 성공의 핵심은 해양 지역 인식 향상의 결과로서 억제와 선취를 통한 미래의 가능성 있는 공격을 예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취약점, 위협, 그리고 타겟의 이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수집하는 정보능력이다. 해양 지역 인식은 정보와 지식의 수집, 사용, 공유의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특정한 지식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 해안경비대(USCG)는 National Foreign Intelligence Program의 공식적인 멤버가 되었다. 이후로 National Maritime Intelligence Center에서 미국 해군과 협력활동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고, 특히 모든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새로운 해안경비대 해양 정보 통합센터(Coast Guard Maritime Intelligence Fusion Centers)가 2003년 미국의 동쪽과 서쪽 해안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통합센터 산하 야전정보지원팀(Field Intelligence Support Teams)은 이제 주요 항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Joint Harbor Centers가 2004년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주(State) 에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출처:(Collins, 2004)

〈그림 1〉 국토안보를 위한 새로운 해양 전략(Maritime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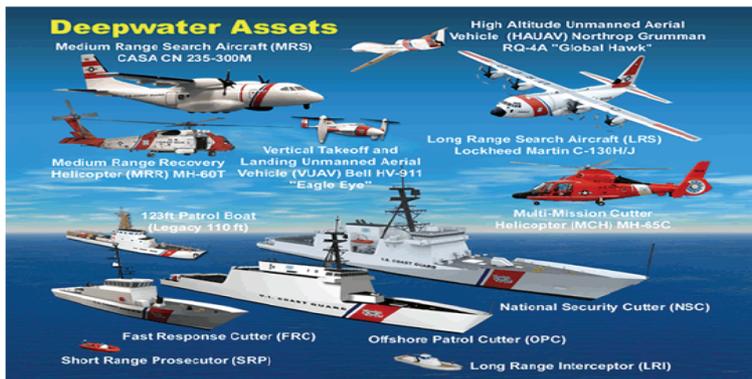
### 3. 통합적인 딥워터 시스템(Integrated Deepwater System)

통합적인 딥워터 시스템(Integrated Deepwater System: IDS)은 25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장비를 교체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시작되었다. 처음 5년은 딥워터 프로그램(IDS)의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고 나머지 20년간 노후한 장비교체를 통한 현대화 작업에 \$24 Billion (약 271조)의 예산을 투자했다(O'Rourke, 2007). 통합적인 딥워터 시스템(IDS)은 해안으로부터 50마일이 넘는 해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주요임무로는 수색, 구조, 마약수송차단, 불법이민자차단, 불법어업단속, 해양오염, 외국선박 조사(미국 영해로 들어올 때), Navy와의 일반적인 국가안보, 해상에서 평시군사개입(Peacetime Military

Engagement), 항구의 보안과 방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O'Rourke, 2007).

딥워터 시스템(IDS)의 핵심은 주력 함정인 National Security Cutter(NSC)는 3250톤급(125미터)으로 승무원은 167명, 항속거리는 25,900킬로미터로 해안경비대(USCG)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2012년 기준)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91척의 새로운 함정(Cutters)을 교체했으며, 124척의 쾌속정과 247대의 현대화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를 보유하고 있다(O'Rourke, 2007). 딥워터 프로그램(Deepwater program)이 완전히 시행될 때, 전체 시스템은 3단계의 새로운 쾌속정과 작은 보트, 그리고 새로운 수정 유인기 함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헬리콥터와 쾌속정 그리고 육상 기반 무인 항공 장비로 구성된다<그림 2 참고>.

통합적인 딥워터 시스템(IDS)는 항만과 해안선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해양 방어를 확대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해양 보안과 다른 임무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통합적인 딥워터 시스템(IDS)이 완성되면, 해안경비대(USCG)는 쾌속정과 항공기는 더 이상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대신에 그들은 다양한 임무로부터의 통합된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해안경비대(USCG)는 쾌속정, 보트, 그리고 유인 항공기와 무인 항공 장비와의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2 참고>.



출처, U.S. Coast Guard's Deepwater program,

<그림 2> 통합적인 딥워터 시스템 (Integrated Deepwater System: IDS)

현재 통합적인 딥워터 시스템(IDS)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한 최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양당으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의 현대적이고, 더 수용 가능한 플랫폼과 시스템이 적절한 긴급 상황에 제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O'Rourke, 2007).

## V.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양경찰

### 1.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분리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편성되었으나, 2008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정부조직법 제 37조 제 3항에 의하면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의 구체적 임무나 관할권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존재 하고 있지 않다(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주요임무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비구난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하고 있다. 둘째, 해상교통 안전관리로써 안전한 해상관광, 레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해상치안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해상범죄예방, 단속을 하며, 넷째로는 해양환경보전으로 해양오염감시활동과 오염사고예방에 목적을 둔다. 다섯째로는 해양오염방제로써 해상 오염물질 유출의 철저한 예방과 방제활동을 하며,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성 범죄 실태를 파악하여 해상밀입국 단속 등 국제해상범죄에 대응하고 있다(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해양경찰청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양경찰은 함정 285대, 비행기 2대, 헬기 17대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은 노후함정 31척을 교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인 선박펀드를 활용하여 총 26척을 건조 계약하였으며(2010년 기준으로), 해양주권 수호역량강화를 위한 광역경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33척으로 증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박주상, 정병수, 하상군, 2011).

하지만, 이것은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비해역에 비하여 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박주상, 정병수, 하상균, 2011).

해양에서의 국가권익을 보호 관장하는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해양경찰과 해군은 임무와 역할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군과 해양경찰의 업무분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군사적 요소와 관련 있는 경우(무력사용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해군이 담당하며, 해양경찰은 주로 민간선박 및 해양환경 등 치안확보가 문제인 비군사적 요소를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김영철, 2011).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적 및 해상테러사건 등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적행위는 형법 제 340조의 “해상강도죄”로서 “선박에 타거나 승선한 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 또는 영해에서 행하는 선박 강취, 운항지배, 재물강취, 인질 강요 등을 해적행위라 규정하고 있어, 군사안보적 측면보다는 해양경찰임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김영철, 2011).

## 2. 미국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미국은 그 광범위한 해안의 방어와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 여러 조직들이 다양하게 해양 및 수상경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해양경찰이 일반 경찰과 같이 따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해양경찰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주(State), 카운티(County) 산하 셰리프(Sheriff's Office) 또는 Constables, 그리고 도시(City)의 경찰청 산하에 소속된 부서 및 유닛(Unit) 중 하나이다. 그 명칭도 Marine Patrol Division 또는 Unit, Harbor Patrol Division 또는 Unit, Lake Patrol Unit, Bay Constables 등 다양하게 불린다.

알라바마,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일부 주(State)들은 자연자원보전청(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Natural Resources) 산하에 해안경찰(Marine Police)를 두어 운용하고 있다. 다른 작은 주(State)들은 산하에 해양 경찰부(Marine Detail 또는 Marine Patrol Division)를 두어 직접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New York)시나 시카고(Chicago), 보스턴(Boston)시와 같이 미국의 일부 대도시들은 시 경찰청 산하에 Harbor Unit 또는 Marine Unit을 두어 운용하고 있다. 단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시의 경우 시 항만부(Harbor Department) 산하에 항만 경찰(Port Police)을 따로 두어 운용하고 있지만 시에서 독자적으로 경찰조직을 운용하는 미국의 특성상 이것을 우리나라와 같이 지휘체계가 이원화 되어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연방정부기관 중 미 동부 뉴욕 및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로 활동하는 미 공원 경찰(United States Park Police)은 Marine Unit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며, 미 이민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도 항공해양부(the Office of Air and Marine)를 두어 운용 중이다. 미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도 산하에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와 수사대(Law Enforcement Detachments)를 두어 해양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경찰의 임무는 각 주마다 대동소이하다. 주 임무로는 미국 상업 및 휴양 어업법을 적용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감시 및 통제, 해상 교통법을 적용하여 해상 교통안전 확보, 해상 사고 및 범죄 활동 조사 및 예방활동, 해양 환경 보존 활동, 해양 순찰 활동, 수색 및 구조, 응급 상황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테러 순찰활동 등의 대테러 임무 수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테러 활동은 연방(Federal)정부 급의 기관인 미 이민국, 미 내무부 및 국립공원 관리청 소속의 공원 경찰, 그리고 해안경비대 산하의 해양경찰부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지상경찰과 해양경찰의 지휘부 이원화를 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상과 해상의 경계를 두지 않아 지상 경찰과 해상경찰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구역의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정보공유의 신속성을 꾀하였다. 대신 미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와 같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광활한 해안에 관련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VI. 결 론

UN의 해양법 발효 후 단순한 해양 수역의 분리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국가의 해양 경계선의 등장으로 새로운 해양 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박대웅, 2008). 이렇게 새로운 해양 경계선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등장으로 자국의 해양경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와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무한해양경쟁체제로 진입하게 되었고(이원희, 2007), 해양은 이런 무한경제체제의 장으로써 각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국토방위에 있어서 해양이란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해양에서의 국토방위와 치안을 해양경찰이란 한 조직에서 모두 담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해안경비대(USCG)와 같은 기관의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준군사조직으로써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로 편입되어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시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군의 지휘 하에 편입되어 임무수행을 한다. 이것은 복합적임무(Multimissions)의 형태를 갖추며 미국 내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정부 기관 중에 하나로 발전해왔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특별법에 의한 법 집행권한 등 서로 다른 기관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협력적인 대응능력을 보여 주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워터 시스템(IDS)을 구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처럼 지금도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복합적 임무 수행의 유연성(Multimission Flexibility)의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및 인원 보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국토방위와 치안이라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경찰 및 다른 국가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양경찰과 군 사이에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해양경찰의 제도적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미국에도 해양경찰은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해양경찰과 조직의 구조와 행정상의 측면에서 약간의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의 성향은 미국의 해안경비대(USCG)와 매우 흡사하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지휘체계의 이원화를 보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해양경찰은 일원화된 지휘체계에서 지상경찰과 해양경찰의 구분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와 같이 한 지휘부에서 국가 전체의 경찰력을 관리 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은 시(City)나 카운티(County), 주(State)에서 독자적으로 경찰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조직 자체가 분리되어 업무상 공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중앙행정기관에 2개의 경찰조직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이원화된 경찰조직 체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박주상, 정병수, 하상군, 2011). 또한, 경찰력의 지휘체계의 이원화는 관할구역 정립의 모호 그리고 신속한 정보 공유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창설 이후 정권 교체 시마다 조직의 구조와 위치가 변경되어 오면서 어떠한 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개편을 실시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에 제한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양경찰 시스템의 제도적 그리고 구조적 변화는 급변하는 시대 정세에 맞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지휘체계의 정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정권 교체 시마다 조직의 소속이 자주 바뀌어 왔다는 것과 미국의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처럼 임무와 조직 및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호래, 2012). 대한민국 해양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이에 맞는 상급조직의 지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지휘체계 정립을 위하여 정확하게 조직의 임무와 그 수행능력에 맞게 지휘체계와 그 소속을 유지하여 역량을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 조직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임무와 조직 및 권한에 관한 그 근거를 마련 그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해야 하겠다. 현재 해양경찰 조직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 제 37조와 대통령령 그리고 국토해양부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행정조직 형태를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 그리고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면도 있다(노호래, 2012). 연방법 차원에서 그 임무와 조직 및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와 비교하여 봤을 때는 그 근거는 미약하다. 그러므로 조직의 임무와 구조 및 권한에 관한 기본법을 법률로 재정하여 근거의 모호함에서 오는 다른 조직과의 임무 및 권한의 충돌을 방지하여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의 운용을 꾀하여야 하겠다.

육상의 경우 장소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우리 영토 내에서 경찰업무가 이뤄지지만 해상의 경우 다른 나라의 주권과 국제법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공간이다(한동훈·차현숙·신창훈, 2010). 또한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경찰의 고유 업무인 치안을 담당하여 왔지만 현재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안승남, 2011). 이런 다른 국가와의 충돌이 빈번할 수 있는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국내치안만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은 그 임무수행과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지휘체제로 인해 그 임무와 관할구역의 모호함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엄연한 해양 국가이며,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을 거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과 인접국가와의 어업협정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과 세계화/국제화에 따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인력의 확충과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력의 확충과 전력증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논의 하였듯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정체성 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영철. (2011). 해적행위 현황과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2호, 145-172.
- 노호래. (2012). 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2호, 95-122.
- 박대웅. (2009). 신해양시대에 대비한 해양경찰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 박주상, 정병수, 하상근. (2011).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社會科學研究第18卷152 第2號, 151-176.
- 안승남. (2011). 지방해양경찰에 관한 연구: 조직 및 해상안전관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이원희. (2007). 해양경찰청 지방조직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이종열. (2006). 해양경찰의 효율적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인천대위기관리연구센터
- 한동훈·차현숙·신창훈 (2010, 11).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하위버령 제정, 해양경찰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Collins, T. H. (2004). Change and Continuity: The U.S. Coast Guard. *Naval War College Review*, LVII(2). 8-26.

O'Rourke, R. (2007). Coast Guard Deepwater Acquisition Program: background, oversight issues, and option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Coast Guard's Deepwater program, *Pacific Northwest Intergovernmental Audit Forum*.

<http://www.auditforum.org/speaker%20presentations/pacific/pniaf%2010%2005/calvo.pdf>

### 2. 웹사이트

United States Coast Guard(USCG) 웹사이트

<http://www.gocoastguard.com/#skipnav>

Wikipedia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Coast\\_Guard](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Coast_Guard)

Wikipedia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Water\\_police](http://en.wikipedia.org/wiki/Water_police)

해양경찰청(Korean Coast Guard) 웹사이트 <http://www.kcg.go.kr/main/index.jsp>

미 공원 경찰(United States Park Police) 웹사이트 <http://www.nps.gov/uspp/>

Wikipedia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Water\\_police](http://en.wikipedia.org/wiki/Water_police)

미 버지니아주 해양자원부(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웹사이트 <http://www.mrc.virginia.gov/>

미 알라바마주 미 자연자원보존청(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Natural Resources) 해양경찰(Marine Police) 웹사이트 <http://www.outdooralabama.com/about/marine-police.cfm>

미 이민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도 항공해양부(the Office of Air and Marine) 웹사이트 [http://www.cbp.gov/xp/cgov/about/organization/assist\\_comm\\_off/amo\\_assistant\\_commissioner.xml](http://www.cbp.gov/xp/cgov/about/organization/assist_comm_off/amo_assistant_commissioner.xml)

시카고 경찰 웹사이트 <https://portal.chicagopolice.org/portal/page/portal/ClearPath/About%20CPD/Specialized%20Units/Marine%20and%20Helicopter%20Unit>

LA 항만경찰 웹사이트 [http://www.portoflosangeles.org/security/port\\_police.asp](http://www.portoflosangeles.org/security/port_police.asp)

뉴욕 주 경찰청 해양부(Marine Detail) 웹사이트 [https://www.troopers.ny.gov/Specialized\\_Services/Marine\\_Detail/](https://www.troopers.ny.gov/Specialized_Services/Marine_Detail/)

**【Abstract】**

## **A Study of U.S. Coast Guard(USCG)**

**Lee, Jae-Seung**

**Lee, Wan-Hee**

**Moon, Jun-Se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in order to suggest a direction to advance the system of Korea Coast Guard. After the effect of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the world is facing with new era of maritime age with emergence of new maritime border 'Exclusive Economic Zone(EEZ)'. Along with new maritime era, Korea also has been facing with the conflicts caused from EEZ. Also, there is a increasing concern abou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since people looking for maritime tourism and leisure sports are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Moreover, national security matters are a big issue in Korea due to the several incidents occurred in the sea such as the attack on Yeon-Pyung Island and the sinking of Cheonan naval vessel. Arising concern on these issues in maritime space requires Korea Coast Guard to handle these effectively. However, the systematical and structural limitation of Korea Coast Guard limit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cent issues.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ilitary force in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ously reformed and developed its system and structure to better handle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through developing project such as the Integrated Deep Water system. Also,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with in Korea. This study expects to suggest a way to advan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Korea Coast Guard through examination of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comparing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operly deal with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arising recently.

**Key words :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United States Coast Guard, Korea Coast Guard, Deep Water System, Marine Police**